

肉加工品輸入自由化가  
國內業界에 미치는  
影響

河 大 重  
〈第一製糖(株) 肉加工企劃室長〉

1. 國內 肉加工業界的 現況

'80년부터 本格的으로 시작된 國內 肉加工業은 그간 年平均 25%의 伸張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正統 肉加工品인 畜肉製品은 年平均 35%의 높은 伸張率을 示顯하였다.

正統 肉加工品이 國內 市場에 첫 선을 보인 이래 6년동안 肉加工業은 國民 食生活 改善과 保健向上에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肉加工用 原料 供給産業인 畜產業界와의 均衡있는 連繫 發展에도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外形的인 發展에도 불구하고 肉加工業界는 많은 經營上의 問題點을 안고 있는 實情이다.

첫째로 肉加工品 原價의 70%를 차지하는 豚肉의 價格不安定으로 인하여 原價上昇에 의한 經營上의 壓迫을 받고 있으며

둘째, 國內 販賣流通上 cold-chain의 普及率이 낮아 業界의 返品廢棄損失額이 賣出額 基準 4% 水準에 이르고 있으며, cold-chain 이 普及擴大를 위한 業界에서의 設備 投資額이 過多한 실정이어서 이 또한 經營上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셋째로 市場規模가 狹小하여 '86年末 基準 930億원 水準에 불과하나 9個 業體가 난립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바 市場規模에 비해 設備投資가 過多한 實情이며 需要開發費用도 業界 形便에 비추어 過多하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肉加工品에 사용되는 주요 副材料 및 包裝材는 대부분 外國에서 輸入 供給하여 生産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關稅率이 25~30%의 높은 수준이어서 이 역시 原價上昇의 要因이 되어 國內 肉加工 市場의 伸張에 커다란 障礙가 되고 있다.

2. 肉加工品 輸入自由化 內譯

'87年 7月 1日字로 輸入自由化된 돼지고기 통조림 등은 당초 '86年 이후 輸入自由化 品目으로 이미 豫示되었으나 國內 業界에 미칠

〈표 1〉 輸入自由化 內譯

CCCN	품 명	자유화 내역	비 고
0206-0101	햄	당초 '86년 이후 자유화품목으로 예시, 현재 자유화 유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품목의 관세율 35%</li> <li>• 당초 수입부과금 부과조건부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예시하였음.</li> <li>• 금차 수입자유화 대상품목 (국내의 현존제품류)</li> <li>• 런치미트 캔, 살코기햄 및 장조림 캔, Pork Hash제품, 스투류제품</li> </ul>
0206-0102	베 이 کن	"	
1601-0100	소 세 지	"	
1601-0200	기타(소세지와 유사한 기타조제품)	'87.7.1일자로 수입자유화	
1602-0100	쇠고기통조림	당초 '86년 이후 자유화품목으로 예시, 자유화유보중	
1602-0102	돼지고기통조림	'87.7.1일자로 수입자유화	
1602-0104	가금고기통조림	'87.7.1일자로 수입자유화	

影響 등을 고려하여 猶豫되었다가 이번에 自由化 確定 告示된 것으로서 肉加工品の 製品別 輸入自由化 內譯은 表 1과 같다.

이번에 輸入自由化된 1601-0102의 소세지와 유사한 기타 調製食料品の 범주에 해당되는 現存의 國內製品이 없어 分類基準이 모호하나 햄버거 패티류가 範疇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며, 전반적으로는 1602-0102 및 1602-0104의 豚肉, 家禽肉, 肉加工 罐제품의 輸入自由化의 취지로 볼 때 豚肉이나 家禽肉을 主原料로 한(기타 채소류, 면류 등과 혼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罐제품류는 輸入自由化 해당 품목으로 간주된다.

### 3. 海外 主要 輸出國 現況

이번 肉加工品類의 輸入自由化와 관련하여 本格的으로 輸入이 豫想되는 나라는 美國과 덴마크이다.

이러한 豫想의 根據로는 첫째, 肉加工品 製造原價의 70%를 占하는 原料豚價가 國內豚價 對比 相對적으로 저렴하고 둘째, 肉加工 罐제품이 自國市場에서 一定規模 이상의 市場基盤을 갖고 있어 大量生産으로 인한 生産 Cost의 引下가 가능하며 셋째, 韓國동란을 전후하여 參戰 外國人 또는 駐韓 美軍을 통하여 國內에

대량 搬入되어 현재까지 不法的이나 國內暗市場에서 오랫동안 流通되어 오므로써 國內 消費者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의 Brand 認知 度를 갖고 있어 비교적 市場導入이 가능한 背景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背景을 갖춘 美國과 덴마크의 原料 豚 價格을 國內豚價와 比較하면 表 2과 같다.

또한 덴마크의 경우 豚肉이나 罐제품의 수출시 輸出支援金을 支給하고 있어 豚價가 저렴한 점 외에도 輸出競爭力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支援金의 財源은 國內 養豚業者에 대한 生産賦課金(즉, 生體 125kg을 기준으로 豚 出荷體重이 낮거나 높을 때 基準生體重量과의 차에 대한 一定額을 부과)함으로써 輸出 豚肉의 경우 D. Kr 4.25/kg, 輸出 罐제품의 경우 D. Kr 2.37/kg을 支援하고 있다.

肉加工品の 主原料인 豚肉의 價格面에서 競爭力을 보유하고 있는 美國과 덴마크의 製品中 그간 國內 暗市場을 통해 商標名이 널리 認知 되어 있는 輸入 가능한 製品類는 다음과 같다.

上記의 製品中 商標認知度 및 品質 등 諸般 商品力 면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간 國內 暗市場에서 特定 消費層을 대상으로 꾸준한 시장을 형성해 오므로써 輸入時 가장 影響이 클 것으로 豫想되는 SPAM製品의 경우 제일제당

〈표 2〉 原料豚價比較

(단위 : 원/kg)

	한 국	미 국	덴 마 크	비 고
지 육 가(kg)	@₩2,197 (-)	@₩1,215 (@\$1.50)	@₩1,296 (@DKr 10.80)	덴마크의 경우 돈가가 통상 미국의 80%선이나, 최근의 Dollar화 약세, 덴마크 크로네화의 강세로 인해 원화 환산시 덴마크산이 고가로 나타남.
생 돈 가(kg)	@₩1,450	@₩802 (@\$0.99)	@₩855 (@DKr 7.13)	
런천미트 생산 부위육의 가격지수 (Picnic, Sau육)	100	80	80	
부위육 가격지수 감안 수정생돈가	@₩1,450 (100)	@₩642 (44)	@₩684 (47)	

〈표 3〉 輸入可能 製品類

	미 국	덴 마 크
제품류	런천미트류 스투류	런천미트류
상표명 (회사명)	SPAM(Hormel) Treet(Armour)  Dinty Moore (Hormel) Premium(Swift)	Tulip(Tulip) Plum Rose (Plum Rose)

〈표 4〉 海外 主要 런천미트캔 가격대비

구분 국별	수출가격 C & F 부 산	통 관 후 도착가격	수 입 자 경 비 포 함 가 격	유 통 마 진 및 세 포 합 소 비 자 가 격
	SPAM (미 국)	@ \$ 1.37	@ ₩1,609	@ ₩1,770
Tulip (덴마크)	@ \$ 0.56	@ ₩658	@ ₩724	@ ₩1,074

340gr 캔기준, 환율 : @810/U\$

에서 輸入自由化가 확정되기 전에 Hormel社 측과 國內 生産 및 販賣의 Lisense계약을 체결하여 '87년 4월이후 生産을 開始함으로써 SPAM製品은 輸入이 不可能하게 되었으나 기타 製品의 경우 '84年 이후 韓國市場 上陸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國內의 輸入可能業體와 接觸을 가져 왔고 특히 Tulip의 경우는 國內의 業體와 輸入販賣 代理店 契約을 이미 締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製品들이 國內에 輸入될 경우 輸入 關聯費用(運送費, 保管料 등), 輸入關稅(35+2.5%) 바 輸入賦課金(5%계상), 輸入通關時 關聯費用 및 輸入者 마진(5%), 最終적으로 流通마진(35%) 및 附加稅를 포함한 消費者價格은 340g 캔당 SPAM @₩2,630, Tulip @₩1,100 수준이 되어 Tulip製品의 경우 同種의 國產製品 價格인 @₩2,400~@₩2,550에 비해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國內市場에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參考로 홍콩 및 日本市場 價格을 기준으로

〈표 5〉 런천미트캔 原價對比

항목	계급	국산제품	덴마크산 제품	비 고
변 동 비 (원재료비) 고 정 비		@ ₩1,145 (885)	@ ₩564 (390)	· 덴마크산 Can 제품 수출시 정부 지원보조 금(Can당 ₩ 97)감안시 제 조원가는 Can 당 @₩547수 준임.
		155	80	
제조원가		@ ₩1,300	@ ₩644	
제 품 합 량	돈 육	95.5%	93.4%	
	진 분	2.4%	4.2%	
	부 재 료 첨 가 제 Salt	1.2%	0.4%	
	합	1%	2%	
량	計	100%	100%	

볼 때 PLUM ROSE(덴마크)의 輸出價格은 Tulip의 120%線, 中共産은 70%線으로 추정 된다.

이렇게 國產製品과의 價格差가 큰 理由는 첫째, 低價의 豚肉使用으로 인한 原材料費 比重의 相對的 低下, 둘째 製造工程의 自動化 및 單一 品種의 大量生産으로 인한 勞務費 등

製造固定費의 節減 등을 들 수 있다.

國產製品的 原價構成을 기준으로 가장 價格競爭力이 높은 덴마크產 製品을 比較해 보면 表 5와 같다.

#### 4. 肉加工品 輸入時 業界의 影響

그간 國內 暗市場을 통하여 꾸준하게 상당한 規模로 流通되어 왔던 外國產 肉加工製品에 대한 國內 消費者 反應을 고려할 때 外國產 製品의 本格的 輸入自由化는 國內 肉加工市場 뿐 아니라 在來의 生肉市場에까지 커다란 影響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既存 暗市場에서 지속적으로 外國產 製品을 구입하여 왔던 外製 選好層 消費者들에게는 그간의 不法流通 外製加工品을 구입하고 있다는 心理的 負擔感을 덜게 함으로써 아무런 負擔感없이 자유로이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뿐 아니라 오히려 從前의 制限의 外製商標 選擇範圍가 폭넓게 확대됨으로써 潛在的 外製 選好層이 輸入製品의 購買에 本格的으로 가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畜肉 罐제품류를 구매하여 食生活에 활용은 하고 싶으나 購入價가 自身의 所得水準에 비해 相對的으로 高價이기 때문에 低價의 代替商品인 混合 소세지를 購買하여 왔던 消費者들은 輸入 罐제품의 價格上 매력과 기존의 혼합소세지 구입가격 수준으로 外製 罐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만족감으로 인해 즉각 輸入製品으로 代替購入할 것으로 예상된다.

結果的으로 相對的 高價格帶의 國內 畜肉製品 市場의 잠식 뿐만 아니라 潛在的 代替市場인 混合製品 市場까지도 輸入 罐제품에 의해 잠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畜肉製品의 流通上 冷蔵保管해야 하는 制限이 있으나, 罐제품의 경우 상온에서 長期間 保管할 수 있는 流通上의 便宜性으로 인해 既存의 流通網 뿐만 아니라 前近代의 在來市場과 小規模 店舖에까지 널리 취급할 수 있는 利點이 있어 既存의 精肉店에서 生肉을 購

入, 직접 料理하여 사용하고 있는 一般 消費層에 까지도 輸入 罐제품의 저렴한 가격대의 매력과 가공제품으로서의 食生活 簡便性, 購入後 保存性의 便易, 外國產 製品에 대한 無條件的인 選好性 등의 要因으로 輸入 罐제품의 需要代替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國內 潛在市場의 잠식은 그간 國內 肉加工市場의 개척과 확대를 위하여 現代式 加工設備 投資로부터 冷蔵庫 등의 流通裝備의 投資 및 消費者 認識提高를 위한 市場開拓 投資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규모의 費用을 投資하여 왔던 기존 肉加工業體의 市場잠식이라는 決定的 惡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된다.

#### 5. 輸入自由化 推進上의 問題點

對美 貿易逆調의 深化 및 貿易收支의 黑字로의 전환등 全般的인 國內外 經濟條件下에서 輸入自由化는 자연스런 추세라 할 수 있겠으나 肉加工品의 경우 國內의 自給自足 가능한 賦存資源인 畜產物을 主原料로 하고 있고, 이러한 畜產物의 生産은 大多數의 農民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相互關聯的 特性과 肉加工品의 輸入自由化에 의해 結果되어질 波及效果를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제 市場導入期에 불과한 肉加工産業에 대해 他産業의 條件과 同一한 基準으로 輸入自由化를 적용한 것은 美國의 關心品目이어서 早期 輸入自由化가 不可避했다는 當局의 背景 說明에도 不拘하고 肉加工業界의 現況 및 特性을 고려할 때 時期尙早라는 點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輸入自由化의 內容面에 있어서도 問題點을 안고 있는 바,

첫째, 加工品 輸入自由化時는 加工品의 主原料인 豚肉의 國際時勢를 감안하여 海外 主要 輸出國의 價格競爭力을 상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후에 最終的으로 가공품의 輸入自由化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當然하나 價格競爭力의 主要 要因을 무시한 채 一방적으로 최종 가공제품을 輸入自由化하였다는 點

이다.

肉加工業界로서는 倒産과 價格競爭力을 키우기 위한 저렴한 豚肉의 輸入中 兩者擇一의 選擇 밖에 주어지지 않은 셈이다.

둘째, 輸入自由化 品目 選定上의 오류이다. 國內 肉加工市場의 一部分으로서 150億원의 市場規模에 불과한 돼지고기 통조림, 家禽肉 통조림에 한하여 自由化措置를 취했다는 것이 一見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實際로는 肉加工 製品의 特性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外見上의 數値만을 증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罐제품이야말로 취급 및 流通上 아무런 制限이 없어 大規模로 輸入 流通시킬 수 있다는 點이다. 肉加工製品中 罐제품을 제외한 햄, 베이컨, 소세지 제품의 경우 製造 후 계속 冷藏庫에 冷藏保管 流通되더라도 國內 食品衛生法上 製造日로부터 25日 내지 30日 정도이다. 歐美 輸出國에서 一般 畜肉製品을 輸出時 國內에 도착하기까지 최단 25日에서 45日이 걸리고 國內 到着 후에는 國內 食品衛生法에 의한 輸入食品 檢疫을 받게 되어 있어 通關후 流通에 이르기까지는 最長 40日 내지 60日이 所要되는 點이다.

이러한 期間의 經過후에도 流通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Cold-chain 流通網을 事前에 保有 또는 新規投資해야 하는 등 現實적으로 一般 製品을 輸入·販賣하기에는 諸般條件이 극히 不利하거나 不可能한 實情이다. 아울러 肉別로 部位別 價格差等制가 定着되어 있는 歐洲나 美國의 경우 햄 등 一般製品은 高級部位를 사용함으로써 製品價格이 비싼 반면 相對적으로 低級部位를 사용하는 罐제품의 價格은 저렴한 실정이라서 韓國의 경우 部位別 價格差等制度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他 先進國 對比時 一般製品은 相對적으로 저렴한 罐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싼 실정이라서 罐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劣勢인 形편이다.

끝으로 輸入自由化와 관련한 國內 諸法規의 施行上 問題點이다. 輸入自由化 施行前에 이와 관련한 關稅 및 食品衛生法上의 충분한 事前檢討와 補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國內 肉加工業界의 경우 原料肉을 제외한 副資材, 包裝材는 全量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實情임을 감안하여 肉加工用 輸入資材의 關稅率은 輸入自由化 前에 引下하는 반면, 原料價格差로 인한 價格競爭力의 相殺을 위해서는 定率의 關稅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輸出國의 原料價와 國內 原料價의 差를 相殺할 수 있도록 差額關稅制度의 事前 導入 施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非關稅側面으로서 食品輸入에 대해 對象國을 제한하고 食品衛生法의 適用, 특히 輸入食品의 檢疫上 각종 使用 添加物의 制限과 檢疫方法 등 節次上의 事前補完으로 間接的인 抑制方案이 補完되었어야 한다.

이러한 상기의 시행과정상의 問題點은 日本의 肉加工品 輸入自由化 過程을 살펴볼 때 뚜렷이 나타난다.

日本의 경우 製品의 輸入自由化 전에 原料肉을 輸入自由化함으로써 肉加工業界가 製品의 輸入自由化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自由化 內容에 있어서도 品目別로 선별하여 段階적으로 輸入自由化함으로써 業界에 대한 충격을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日本 國內 畜肉市場의 10%에 不過함에도 불구하고(韓國은 25%) 流通上 制限이 없는 罐제품(콘비프, 런치미트 뿐 아니라 햄, 베이컨이라도 牛肉이나 豚肉을 原料로 하여 密廢容器에 넣어 살균·조리한 것을 망라)은 輸入自由化가 施行된지 15年 후에야 自由化하였다. 또한 輸入自由化 實施 전

〈표 6〉 日本의 輸入自由化 內譯

	중요내역	1인당소비량(kg)	
		일본	한국
1958	아시아계임	0.45	—
1964	동경올림픽	1.28	—
1970	원료 수입자유화	2.19	—
1971	소세지 수입자유화	2.36	—
1972	햄·베이컨수입자유화	2.50	—
1986	罐제품 수입자유화	4.01	0.26

※ 축육제품 기준

에 日本政府는 業界와의 公聽會 등을 통하여 業界의 建議를 收容하여 肉加工業界에 대한 稅制 및 金融上的 지원과 原料肉輸入에 대한 外換割當制의 廢止를 통한 全面的 原料肉 輸入自由化의 施行 등 事前 與件造成에 힘을 기울였다.

## 6. 輸入自由化 對處方案

國內 原料價의 相對的 高價로 인한 輸入製品과의 價格競爭力 側面에서의 劣勢를 補完하기 위해서는 競爭國 肉加工用 原料價 水準으로 原料를 確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肉加工業界로서는 加工用に 한하여 低價 原料肉의 輸入自由化가 절실히 요청되나, 原料肉의 輸入自由化가 國內 畜產業界의 基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原料肉 輸入自由化보다는 畜產業界와의 共存 並行發展을 기할 수 있으며 加工原料의 價格差를 相殺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해야 하겠다.

즉, 海外 加工品の 저렴한 原價競爭力을 相殺할 수 있는 수준으로 國內 肉加工業體의 使用原料價의 輕減이 補完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長期的 見地에서는 國內 畜產業의 規模化, 現代化를 통한 畜產 生産原價의 大幅의 引下가 必要하다고 본다. 그간 經濟外的 與件下에서 官의 主導로 保護되어 온 國內 畜產業界도 肉加工品の 輸入自由化를 맞이하여 이제부터 畜產業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官主導의 經濟外的 保護속에서 飼養頭數의 制限 등을 통한 供給量 調節 등 他律的 調整을 지양하고 自體的으로 종돈에서부터 飼養管理에 이르기까지 諸般過程에 대한 技術開發을 통해 現代化되어야 하며 또한 規模의 經濟化를 통해 生産費의 節減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한편 短期的으로는 덴마크의 경우처럼 生産者의 適正利益 水準을 算定한 후 豚價上昇時 生産者團體로부터 그 差額을 徵收하여 肉加工業體의 加工用 原料使用분에 대해 支援하여 結果적으로는 畜產生産業者와 加工業者 모두

安定된 原料價 水準에서 相互發展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최근 日本 國內 豚價의 下落으로 國內 養豚業保護를 위하여 肉加工業界에서 豚肉을 主原料로 新製品을 개발시 國產豚肉을 사용하면 肉加工業界에 대해 製品 原材料費의 50%를 지원하고 있어 이러한 方案도 차제에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關稅制度 및 食品衛生法의 補完을 통한 間接的 輸入規制이다.

즉, 輸出國의 豚價와 國內 豚價 差로 인한 價格競爭力을 相殺할 수 있는 만큼의 實質課稅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現行 關稅率에 (35%) 輸入賦課金을 相當水準으로 査定 부과함으로써 國內 製品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輸入自由化時 價格競爭力이 매우 높을 것으로 豫想되는 輸出國에 대하여 輸入制限地域으로 規制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다.

食品衛生法上으로는 既存의 法規 內容을 質的으로 補完하여 含量이나 成分 등에 대해 規定을 강화함으로써 輸入可能範圍를 축소시켜야 하겠다. 또한 輸入되더라도 檢疫의 條件을 강화시켜야 하겠다.

國內 肉加工業體로서는 韓國의 特性에 맞는 製品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선진 기술의 적극적 도입을 통한 技術向上으로 品質向上 및 品質競爭力을 제고시켜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消費者 認識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맹목적으로 국내 육가공품의 品質水準을 무시하고 外製品을 選好하는 意識이 고쳐져야 하겠다. 이는 國產品 愛用이라는 感價的 次元에서가 아니라 製品成分, 含量, 맛 등의 質的인 內容面에서 比較하고 선택해야 하겠다.

어쨌든 '87年 7月부터 肉加工 罐제품의 輸入이 개방되었다. 이제는 輸入自由化가 國內 肉加工業界와 이와 不可分의 關係에 있는 畜產業界 및 기타 關聯業界에 미치는 惡影響을 極小化시키기 위해 官과 肉加工業界 및 모든 關聯業界가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는 勞力を 경주해야 하겠다. ■